

#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 안	148
번 호	

제출년월일 : 1992. 1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2. 주요골자

'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중 세입결산액은 3369억 4782만 9330원, 세출결산액은 3069억 8729만 286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159억 2022만 289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4031만 3580원으로서 총 299억 6053만 647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 3. 결 산 서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9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붙임
- 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우편번호 360-160 / 주소 정주 산남 4-11 / 전화 272-0414(0431) / 전송 271-8696

문서번호 : 의사 01600-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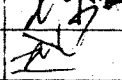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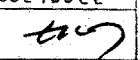

시행일자 : 1992. 11. 4.

(경 유)

수 신 : 충청북도교육감

장 소 : 행정관리담당관

제 목 : 의안 이송

선 근 계	교육감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92.11.5	결 재 · 승 인 · 관 람	부교육감	
	번호	1283		관리국장	
	처 리 과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관리팀장	
	담당 자			행정관리팀장	

1. 행관'01610-460('92.10.8)의 관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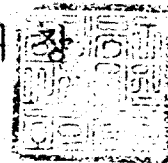
2. 위 대호로 제출하신 '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덧붙임과 같이 이송합니다.

의안번호	의 안 명	의 결 내 용	비 고
16 - 1	'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승 인	시정 촉구사항 없음 부대의견으로 하여 승인함.

덧 붙 임 : 1. '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부.

2. '9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부대의견 (시정 촉구사항) 1부. 끝.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안 번호	16 - 1
----------	--------

제출년월일 : 199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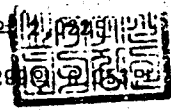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받고자 함.

## 2. 주요골자

'91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중 세입결산액은 3,369억 4,782만 9,330원,  
세출결산액은 3,069억 8,729만 2,86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159억 2,89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4,031만 3,580원으로서 총 291억 6,47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 3. 결산서 : 별 점

## 4. 참고사항

가. '9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별 점

나. '91. 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결산요령 : 별 점

# '9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부대의견(시정 촉구사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 1. 교단경비 배부 소홀

'91년도 도교육청 소관으로 편성된 고등학교 교단경비 예산중 5,665만 8천원을 학교에 배부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 이는 교단경비를 우선지원하여 학교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르지 못한 예산운영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에 편성된 교단경비는 전액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여 주심은 물론 교단경비 지원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2.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소요액 과다 걱정

'9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예산액으로 124억 9,187만 8천원을 확보하여 그중 114억 3,994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0억 5,193만 3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와 학교 자체수입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10억 5천여 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었음.

또한 사학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회계년도중 이를 재검토, 여유자금을 시설비 보조금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극적인 예산운영**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는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비로 책정 할 것을 당부드리며 법인 전입금의 확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3. 체육고 선수급식비 예산편성 소홀

체육고등학교 선수급식비로 4억 2,33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학생수, 급식일 수 등에 변동이 있어 1억 6,089만 9천원 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액의 62%나 되는 2억 6,245만 1천원을 불용액으로 방치한 바,

년도중이라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요소에 변동이 있을시 이를 정확히 계상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4. 사고이월 사업 물량과다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에 완료하는 것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나 도교육청의 경우 '91년도 시설사업중 27건 이상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처리되었으며, 그중 10건은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채 이월됨으로써, 다음 년도에 지수조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1억 953만 5천원을 추가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계공무원은 사업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좀 더 적극적 자세로 임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